

의안 번호	제3620호
----------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5월 23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 다. 상 정 일 자 : 2025년 6월 19일
- 라. 의 결 일 자 : 2025년 6월 19일

2. 제안이유

- 이용신청, 취소, 변경 등 미비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사용료 면제 및 반환 규정 신설을 통한 사용료 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장비 사용에 대한 관련 조항 부재에 따라 장비사용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비 사용을 위한 장비 대여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나. 무분별한 이용신청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가능기간 및 신청·변경 등 명확화
(안 제7조)
- 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용 등 면제 조항 신설
(안 제10조)
- 라.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마.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아트홀, 아트빌리지, 시립도서관 등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들과 시설별 목적(문화 활동 등)이 상이하야 사용료 감면 비율이 다른 점은 충분히 이해됨. 다만, 이로 인해 시민들이 감면 비율 차이에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이에 대한 안내를 보다 명확하고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